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65
----------	------------

제안년월일 : 2016년 4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서 금년말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삭제하며,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폐지하기보다는 가입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함.

## 2. 주요 골자

-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함.  
(안 제9조)

## 3. 참고사항: 생략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1호를 제3호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2.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안 제9조제1항제2호를 제6호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혜택) ① ----- ----- ----- ----- -----	제9조(혜택) ① ----- ----- ----- ----- -----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남산 1·3호 터널 혼잡 통행료 50% 할인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1.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자동차세 5% 감면	<삭 제>	5. (개정안과 같음)
6.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2.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6.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자동차세 5% 감면</p> <p>6. 그 밖에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p>	<p>제9조(혜택) ① ----- -----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6. (현행과 같음)</p>